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20260204]

최초등록일 [2026.02.13.]

최종등록일 [2026.02.13.]

쎄스시

정 보 공 개 서

주식회사 다이닝스타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25 . 12 . .

주식회사 다이닝스타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추는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 1403-4 굿프라임2빌딩 601호

전화번호 :  (비공개)

팩스번호 : 없음

가맹사업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 : 경영지원본부  (비공개)

목 차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4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8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3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4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22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45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48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51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52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된 정보공개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한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영업표지	주 소			
주식회사 다이닝스타	썸스시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 1403-4 굿프라임2빌딩 601호			
	법인 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2023.05.03	2023.05.15	고병철	 (비공개)	없음
	법인등록번호	135811-0467811	사업자등록번호	431-81-02991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당사의 특수관계인 중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 경영 경험이 있는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해당 사항 없습니다.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당사는 바로 전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다른 기업(가맹사업 영업표지를 포함하여 가맹사업을 경영한 기업)을 인수·합병(다른 기업의 가맹 관련 사업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도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적이 없습니다.

인수·합병 여부	기업명	영업표지	인수·합병일	주 소	대표자
가맹본부가 다른 기업을 인수함	해당없음				
가맹본부가 다른 기업의 가맹사업 일부를 인수함	해당없음				
다른 기업에 가맹사업 일부를 인도함	해당없음				
다른 기업이 가맹본부를 합병함	해당없음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앞으로 '쎄스시'라 합니다)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쎄스시	
상 호	쎄스시 OO점	
상표(서비스표)		출원번호: 4020250218299
광 고	해당없음	
그 밖의 영업표지	해당없음	

5.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 이익	당기 순이익
2022년
2023년	53,340	311,486	-258,146	286,412	-94,102	-178,255
2024년	224,364	304,255	-79,890	278,774	-180,218	-179,890

그 근거자료는 별첨 1과 같습니다.

2)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영업표지 ^②	연도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 ^{③④}		
		매출액	상한	하한
썸스시		해당없습니다.		

직영점 매출액은 없습니다.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여부	이름	현 직위	사업경력		
			기간	직위	담당 업무
가맹사업	고병철	대표이사	2023.05.~현재	주식회사 다이닝스타 대표이사	회사 업무 총괄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임원수(명)		직원수(명)
	상근	비상근	
2024년 12월 31일	1	.	.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가맹사업을 경영하였거나 경영하고 있습니다.

관계	상호/이름	구분	기간	사업내용
해당 사항 없습니다.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①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권리내용	등록 및 등록신청 여부(일자)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신청자)	존속기간 만료일 (가맹본부의 사용기간)
썬스시 (상표권)	간판, 옥외 배너 광고, 상품에만 사용이 가능	2020.05.14.. 출원 2021.06.27. 등록	출원 4020200079957 등록 4017448710000	주식회사 다이닝스타	2023.06.27
썬스시 (상표권)	간판, 옥외 배너 광고, 상품에만 사용이 가능	2025.11.24. 출원	출원 4020250218299	주식회사 다이닝스타	

출원중인 지식재산권의 경우 당사의 상표 등을 사용하는 권리는 관계법으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바로 전 3년간 쉐스시 가맹점 수

(단위: 개)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2	-	-	-	-	-	-
2023	-	-	-	-	-	-
2024	-	-	-	-	-	-

6. 쉐스시 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당사는 쉐스시 외에도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고 있는 가맹사업의 최근 3년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개)

구분	상호/이름	영업표지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업종	가맹점/직영점의 수		
					2022.12.31.	2023.12.31.	2024.12.31.
해당 사항 없습니다.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쉐스시 가맹점사업자 한 명이 2024년에 올린 연간 평균 매출액 및 지역별 매출액은 아래와 같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다 정확한 금액은 매출액 표의 상한과 하한 금액 사이에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지역	2024년 말 가맹점수	2024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⑤
		연간 평균 매출액		연간 평균 매출액(상한)		연간 평균 매출액(하한)		
		연간 평균 매출액	면적 ^⑥ 3.3m ² 당	상한	면적 3.3m ² 당	하한	면적 3.3m ² 당	
전체	-	해당없음						
서울	-	해당없음						
부산	-	해당없음						
대구	-	해당없음						
인천	-	해당없음						

광주	-	해당없음						
대전	-	해당없음						
울산	-	해당없음						
세종	-	해당없음						
경기	-	해당없음						
강원	-	해당없음						
충북	-	해당없음						
충남	-	해당없음						
전북	-	해당없음						
전남	-	해당없음						
경북	-	해당없음						
경남	-	해당없음						
제주	-	해당없음						

매출액은 가맹점사업자별로 물품 공급액, 시장상황, 점주의 노력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표에 나타난 매출액이 귀하가 올릴 수 있는 미래 수입과 같지는 않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따라 당사가 매출액 추정에 사용한 자료는 당사의 본사 사무실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본사로 방문하여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8. [웬스시]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웬스시]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4	해당사항 없습니다.	해당사항 없습니다.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당사는 웬스시 가맹점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지역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리지역	상호/명칭	주 소
해당사항 없습니다.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당사에서 2024년에 쉐스시과 관련하여 광고비 및 판촉비로 사용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광고비 및 판촉비를 가맹점사업자와 분담하는 기준은 [42]쪽을 참고하십시오.

구분	수단	기간	지출 비용(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비고
			합계	가맹본부	가맹점	
해당사항 없습니다.						

11. 가맹금 예치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국민은행]에 예치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 상호	담당 지점 또는 부서	주소	전화번호
국민은행	정자동종합금융센터지점	경기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 353	1588-9999

자세한 예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는 가맹금을 [국민은행]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계약 체결 다음 날까지 예치신청하여야 합니다. 예치방법은 [국민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고 고객유형을 가맹점사업자로 선택하신 후, 프랜차이즈 가맹금 인터넷 예치서비스 약관에 동의 후 정보를 입력합니다. 이후, 가맹금예치 메뉴에서 납부할 가맹본부를 조회/확인 후 가맹금 예치를 수행합니다.

귀하는 또한 [국민은행]에서 발급한 예치증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합니다.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 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3.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내역이 없습니다.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의 또는 시·도 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와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썬스시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보증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기타 비용	해당없음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16,500				
가입비	11,000	계약 체결 후 20일 이내	영업 개시 이전까지 계약 해지	가맹점 모집을 위해 소요된 실제비용	반환시 당사에서 정한 기준의 위약금을 공제 (계약금을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 사후 가입비로 전환)
교육비	5,500	교육 시작 7일 이전	교육 시작 1일 이전에 계약 해지	교육 강사의 일정 변경 불가능	교육이 시작되면 반환되지 않음

2) 보증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보증금은 계약 종료시 전액이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없음)


구분	금액	지급 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비고
총계	5,000			
(현금)보증금	5,000	계약 체결 후 20일 이내	가맹본부로부터 구입한 상품 또는 제품의 매매대금 및 상표사용료 기타 가맹본부에 대한 채무 미지급	
담보목적물	.	.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의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단위: 천원)
합계	21,500
가입비	11,000
교육비	5,500
(현금)보증금	5,000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귀하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의 품목은 [21]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면적 3.3m2당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비고
총계		149,200				66m ² 기준
회전컨베이어	주식회사 다이닝스타	24,200	1,210	계약시50%+ 공사완료시 50%	설치 전 계약취소	20m기준
인테리어 (점포 내장공사)	주식회사 다이닝스타	66,000	3,300	계약시50%+ 공사완료시 50%	공사 전 계약취소	
가구	주식회사	11,000		계약시50%+	설치 전	


	다이닝스타			공사완료시 50%	계약취소	
간판 및 썬팅	주식회사 다이닝스타	11,000		계약시50%+ 공사완료시 50%	제작 의뢰 이전	간판, 현수막 배너, 내부 액자 및 실사
주방 설비 및 집기	주식회사 다이닝스타	33,000		계약시50%+ 공사완료시 50%	주문 이전	각종 냉장고, 수족관, 초밥집시 외
최초 공급 상품 비용	협력업체	4,000		물품공급이후 15일 이내	주문 이전	초도물품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가맹점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당사 지정 업체 외에는 공사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선정 기준
당사 점포개발팀 (전화:  (비공개))	담당자 배정 → 상담을 통하여 가맹희망자가 원하는 지역 파악 → 현장 조사 등 시장 분석 → 최적의 입지 도출 → 가맹희망자에게 동의 여부를 구함 ※ 가맹희망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새로운 입지를 정할 수 있으나 영업이 늦어지는데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추가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국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을 것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이 아닐 것 만19세 이상일 것
종업원	특별한 기준 없음	만18세 이상일 것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 · 공급업체

웬스시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이 항목은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8) 한편, 귀하가 당사에 가맹금을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가맹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구분	총액	계약금	중도금	잔금
금액(천원)	21,500	총액의 50%	40%	10%
납부일		계약일	계약일+ 15일	계약일+ 30일
비고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 부담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상표사용료	주식회사 다이닝스타	매월 총매출의 3.3%	익월 10일			
리스료		해당없음				
상품(또는 브랜드)광고 분담금	주식회사 다이닝스타	총 광고비용의 50%중 귀하 부담분	명세서 수령 후 7일이내	반환안됨	광고비로 비용소요	가맹점사업자 간 균등부담
상품(또는 브랜드)광고 +가맹점모집 광고분담금	주식회사 다이닝스타	총 광고비용의 25%중 귀하 부담분	명세서 수령 후 7일이내	반환안됨	광고비로 비용소요	가맹점사업자 간 균등부담
판촉분담금		해당없음				
모바일 상품권	주식회사 다이닝스타	전체 수수료의				

수수료분담금		50%				
교육훈련비	주식회사 다이닝스타	교육일정별로 부담	교육 실시 10일 이전	교육일 1일 이전	교육 시작	교육 필요시 지급
간판류 입차료		해당없음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주식회사 다이닝스타	8,000	간판 변경 후 2일 이내	간판 시공 이전	시공 후	부득이한 경우 변경될 수 있으며, 교체비용은 당사자의 귀책사유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
영업지역 보장금		해당없음				
인테리어, 시설, 각종 기기의 교체·보수 비용	주식회사 다이닝스타	14,000~ 16,000	교체·보수 후 5일 이내	시공일 1일 이전	시공 후	교체·보수 필요시 시설, 기기 등의 내구연수 등을 감안하여 당사와 협의하여 결정
점포환경개선 비용	주식회사 다이닝스타	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46페이지 참조
재고관리 비용		해당없음				
POS 사용료		무상				
지연이자		해당없음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2024)년도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기준: 2024년)	내용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	없음
가맹점당 평균매출액 대비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의 비율	없음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귀하의 영업 상황에 대하여 일정한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독 항목	내 용	시기	비고
작업장환경관리	청결 상태 점검 실시	분기별 1회	
메뉴관리	본사지정 메뉴 조리 상태 점검 실시	분기별 1회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 필요한 추가 비용은 없습니다.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시 조치사항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의 계약 관계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점운동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이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이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귀하가 운영하는 쉐스시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귀하가 주식회사 다이닝스타에 지급해야 할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양수인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에 필요한 교육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입비도 가맹본부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귀하는 계약이 종료된 경우 계약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본사에 대한 채무 전액을 본사에 지급해야 하며, 채무상환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변제기일의 익일부터 기산하여 완제일까지 연리 20%의 지연손해금을 가산 지급하여야 합니다.

귀하는 계약의 기간 만료 또는 해지시 점포의 영업, 본사의 등록 상표 상호의 사용을 즉시 중지해야 하며 모든 시설물을 가맹점사업자의 비용으로 철거해야 합니다.

귀하는 계약의 기간 만료 또는 해지시,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 계약서, 운영메뉴얼 등 지적재산권 관련 자료 일체를 반환하여야만 합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1) 귀하가 썬스시를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해야 할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순번	품목(단위)	공급가격		구분
		상한	하한	
해당사항 없습니다.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썬스시를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거래 요구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 1) 당사는 썬스시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상품·용역 ^①	거래상대방	대가 지불	경제적 이익의 내용	금액	비고
해당사항 없습니다.					

- 2) 당사가 썬스시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관계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대가 지불	경제적 이익의 내용	금액	비고
해당사항 없습니다.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계란초밥	왼쪽에 기재된 이외의 제품을 판매할 수 없음	1회 위반: 구두 경고 2회 위반: 2회 이상 서면 시정요구 3회 이상 위반: 계약 해지	
유부초밥			
빨소라초밥			
가리비초밥			
초새우초밥			
초새우양파마요초밥			
한치초밥			

한치양파마요초밥			
생새우초밥			
간장생새우초밥			
양념생새우초밥			
육회초밥			
날치알군함			
게맛살군함			
날치알마끼			
게맛살마끼			
치즈계란초밥			
치즈초새우초밥			
치즈가리비초밥			
치즈빨소라초밥			
계란새우스테이크초밥			
갈릭초새우스테이크초밥			
갈릭생새우스테이크초밥			
갈릭가리비스테이크초밥			
갈릭빨소라스테이크초밥			
갈릭관자스테이크초밥			
와규스테이크초밥			
와규소고기묵은지초밥			
와규불닭스테이크초밥			
육회스테이크초밥			
불닭육회스테이크초밥			
불닭생새우스테이크초밥			
불닭초새우스테이크초밥			
연어초밥			
연어스테이크초밥			
연어육회말이			
연어불닭마요스테이크초밥			
소금오일연어스테이크초밥			
광어지느러미초밥			
참돔초밥			
연어양파초밥			

명란연어스테이크초밥			
광어초밥			
보리숭어초밥			
활어묵은지초밥			
감태아귀간초밥			
타코와사비군함			
연어대뱃살초밥			
고등어(사바)초밥			
키조개관자트리플초밥			
참다랑어(등살)초밥			
붉은홍새우초밥			
광어성게알초밥			
붉은홍새우아귀간초밥			
트리플육회아귀간초밥			
연어타코와사비			
육회타코와사비			
활어육회묵은지초밥			
참다랑어뱃살초밥			
감태성게알초밥			
연어알군함			
민물장어초밥			
도미양념뱃살초밥			
찐진복초밥			
와규타다끼초밥			
황새치뱃살초밥			
망어초밥			
전어초밥			
연어5종			
활어5종			
참치5종			
와규5종			
썬모듬5종			
연어스페셜롤			
후토마끼롤			

소프트크랩롤			
어묵우동			
김치우동			
썬소담세트			
썬든든세트			
썬풍성세트			
썬모듬세트			
썬특모듬세트			
연어12p			
광어12p			
연어광어12p			
연어양파12p			
연어트리오12p			
생새우트리오12p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고 있습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고객에 대해 상품·용역을 판매하지 않아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상대방 (고객)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미성년자	주류	거래상대방별로 기재된 제품은 판매할 수 없음	1회 위반: 구두 경고 2회 위반: 2회 이상 서면 시정요구 3회 이상 위반: 계약 해지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에게 제한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고객)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고 있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용역명	권장가격(단위: 원)	가격 통보 방법	비고
계란, 유부, 빨소라, 가리비, 초새우, 초새우양파마요, 한치, 한치양파마요, 생새우, 간장생새우, 양념생새우, 육회1p, 날치알군함, 게맛살군함, 날치알마끼1p, 게맛살마끼1p 치즈계란, 치즈초새우, 치즈가리비, 치즈빨소라 계란새우스테이크1p, 갈릭초새우스테이크, 갈릭생새우스테이크, 갈릭가리비스테이크, 갈릭빨소라스테이크, 갈릭관자스테이크 와규스테이크, 와규소고기묵은지, 와규불닭스테이크, 육회스테이크1p, 불닭육회스테이크1p, 불닭생새우스테이크, 불닭초새우스테이크 연어, 연어스테이크, 연어육회말이1p, 연어불닭마요스테이크, 소금오일연어스테이크 광어지느러미1p, 참돔1p	1,890	월별로 공지	2024.12월 기준
연어양파, 명란연어스테이크, 광어, 보리송어, 활어묵은지, 감태아귀간, 타코와사비군함	2,200	“	“
연어대뱃살, 고등어(사마), 키조개관자트리플, 참다랑어(등살), 붉은홍새우1p	2,600	“	“
광어성게알1p, 붉은홍새우아귀간1p, 트리플육회아귀간1p, 연어타코와사비, 연어육회타코와사비, 활어육회묵은지, 참다랑어뱃살1p, 감태성게알1p, 연어알군함1p, 민물장어1p, 도미양념뱃살1p, 찢전복1p, 와규타다끼, 황새치뱃살	3,600	“	“

연어5종	7,590	“	“
활어5종	7,590	“	“
참치5종	9,790	“	“
와규5종	7,390	“	“
썬모듬5종	10,290	“	“
연어스페셜롤	7,000	“	“
후토마끼롤	7,000	“	“
소프트크랩롤	7,000	“	“
어묵우동	7,000	“	“
김치우동	7,500	“	“
썬소담세트	13,900	“	“
썬든든세트	16,900	“	“
썬풍성세트	19,900	“	“
썬모듬세트	22,900	“	“
썬특모듬세트	28,900		
연어12p	18,900	“	“
광어12p	20,000	“	“
연어광어12p	20,000	“	“
연어양파12p	22,000	“	“
연어트리오12p	21,000	“	“
생새우트리오12p	13,900	“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당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가맹본부	계열회사
초밥을 판매하는 가맹사업	썬스시	해당없음

2) 영업지역 설정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방법
점포를 중심으로 반경 1,000m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지도별점을 원칙으로 함)
단, 특수상권(백화점, 마트, 시장, 지하상가, 공항, 호텔 등)은 행정구역과 상관없이 별도의 영업지역으로 인정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지도별점을 원칙으로 함)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영업지역 변경 완료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 (신규 점포 입점 가능)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역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

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정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썬스시’ 영업표지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썬스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해당사항 없습니다.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연도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②
2024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당사는 온라인 판매를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4	해당없음	해당없음

※당사는 온라인 판매를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1) 가맹계약 및 갱신 기간

웬스시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가맹계약서에 별도 표기일까지이며, 가맹계약 갱신시 계약기간은 계약갱신일로부터 1년입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 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간(계약만료일: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 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 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21조 1항
○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가맹점사업자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21조 1항
○ 가맹점의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에 관한 가맹본부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21조 1항
○ 상품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리법, 식자재 구입 및 관리 또는 서비스기법의 준수에 관하여 가맹본부가 정한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21조 1항
○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관하여 가맹본부가 정한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21조 1항
○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다만,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21조 1항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계약서 1)제3조 제2항, 2)제5조 제2항, 3)제8조 제6항 및 제7항, 4)제11조, 5)제13조 제1항, 6)제14조 제2항 및 제3항, 7)제16조, 8)제17조, 9)제19조의 “을”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22조 제1항
○ 가맹점사업자가[센스시]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한 경우	제22조 제1항
○ 가맹본부와 사전협의 없이 점포의 운영을 중단하거나 3일 이상 임의로 휴점한 경우	제22조 제1항
○ 가맹점사업자가 제13조 제2항10) 각호의 서비스 또는 물품 공급중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22조 제1항
○ 고객으로부터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클레임이 제기되어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개월이 지나도록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제22조 제1항
○ 기타 본 계약에 정한 가맹점사업자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본 계약에 따른 가맹본부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제22조 제1항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계약해지의 사유를 통지하고 그 시정을 요한 이후 최소 3회차에 계약을 해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p>다른 가맹점의 이익 및 영업지역을 보호하기 위하여 귀하가 임의로 지정된 영업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광고·관측활동을 할 수 없다. 다만 가맹점사업자의 광고·관측활동으로 인하여 직접적 관련을 갖는 타 가맹점의 허락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p>	<p>제3조 제2항</p>
---	----------------

2)

<p>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로부터 구입한 상품 또는 제품의 매매대금 및 상표사용료 기타 가맹본부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본 계약 체결시 금 500만원의 보증금을 본사에 예탁한다. 보증금에는 이자가 붙지 않으며, 본사는 본 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된 경우에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에게 지급해야 할 물품대금 및 손해배상금 등을 공제한 후 잔금을 가맹점사업자에게 반환한다.</p>	<p>제5조 제2항</p>
--	----------------

3)

<p>가맹점사업자는 점포환경을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가맹본부는 본 계약체결일로부터 ()년이 경과하면, 점포설비(간판 등)에 대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가맹점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단 비용에 관해서는 협의할 수 있다.</p>	<p>제8조 제6항, 제7항</p>
--	---------------------

4)

<p>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사전 서면 승인이 없는 한 가맹점 운영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대표자 명의를 변경할 수 없으며, 본 계약과 관련한 권리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가맹본부의 사전승인을 받아 운영을 양도하거나 대표자를 변경한 경우에도 위 제9조 제3호의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영업 양수인 또는 대표자는 가맹본부에 가맹금, 기술전수비, 보증금을 지급해야 한다. ※ 제9조 3호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계약서에 명시한 날짜에 중도금 및 잔금의 입금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가맹본부는 점포 오픈준비를 완납이 이루어지는 시점으로 미루고 오픈준비를 중지한다.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허락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명이나 계산으로, 그가 운영하였던 가맹점과 동일 (특별시, 광역시, 도, 시) 내에 2년동안 “갑”의 가맹점과 동일 또는 유사한 업종의 영업 또는 가맹사업(타 가맹본부의 가맹점 또는 가맹본부 포함)을 운영할 수 없다.</p>	<p>제11조</p>
--	-------------

5)

<p>가맹점사업자는 “센스시”를 찾는 고객에게 통일된 맛과 표준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수품목은 본사 또는 본사가 지정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제품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본사의 허가를 얻어 타 상품을 구입, 판매 또는 취급할 수 있다.</p>	<p>제13조 1항</p>
--	----------------

6)

다만,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아래의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통지 없이 계약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p>가맹점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가맹본부가 제공한 기기 또는 시설물을 분실 또는 훼손하여 그 사용이 불가능해진 경우에는 본사의 최초 구입가격으로 변상할 책임이 있다.</p> <p>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반환 요구가 있을 경우 대여 기기 또는 시설물을 즉시 가맹본부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고장 또는 훼손이 있을 때는 이를 원상 회복하여 반환한다. 단,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가맹본부가 입은 손해를 배상한다.</p>	<p>제 14 조 제 2 항, 제3항</p>
---	--------------------------

7)

<p>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 관리사원을 파견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점포경영에 관한 사항을 지도할 수 있다.</p> <p>1) 판 축 : “썬스시” 제품의 소개와 개개의 제품 특성을 살리는 방법에 대한 설명 및 지도</p> <p>2) 판로개척 : “썬스시” 제품의 판매증진을 위한 활동 지도</p> <p>3) 점포의 경영, 세무상담 및 기타 점포경영상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의 분석 및 경영지도</p> <p>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훈련요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가맹본부는 파견의 필요성이 인정 될 경우에는 즉시 훈련요원을 파견한다. 훈련요원을 파견하는데 따른 비용은 가맹본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한다.</p> <p>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에서 파견한 관리사원 및 훈련요원의 경영지도 활동에 적극 협조한다.</p> <p>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가 모니터 요원 또는 관리사원 등을 통해 얻은 정보 등을 토대로 한 영업, 판매방법, 컴퓨터 관리, 시설물의 개보수 등의 제반 업무에 관한 개선안에 따라야 한다.</p>	<p>제16조</p>
---	-------------

8)

<p>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가 요구하는 사항을 가맹본부가 정하는 기준과 기간에 맞추어 보고한다.</p> <p>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가 파견한 관리사원 및 이에 준하는 경영지도 요원의 요구가 있을 때는 장부 등 서류 일체를 제시하여야 한다.</p>	<p>제17조</p>
---	-------------

9)

즉시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제22조 2항
○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된 경우	제22조 2항
○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제22조 2항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제22조 2항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22조 2항
○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 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22조 2항

<p>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판매증진을 위하여 TV(케이블 TV포함), 인터넷, 라디오, 신문, 잡지, 지역 정보지, 기타 매체에 판매촉진 광고활동을 계획 및 전개하며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p> <p>“상품(또는 브랜드) 광고”에 소요되는 비용은 가맹본부가 50%, 해당 가맹점 사업자가 50%씩 각각 분담한다. 가맹점사업자 간의 개별 분담액은 광고시행 직전 분기의 각 가맹점사업자의 총매출액 비율에 따라 산정한다.</p> <p>“상품(또는 브랜드) 광고 + 가맹점모집 광고”에 소요되는 비용은 가맹본부가 75%, 해당 가맹점 사업자가 25%씩 각각 분담한다. 가맹점사업자 간의 개별 분담액은 광고시행 직전 분기의 각 가맹점사업자의 총매출액 비율에 따라 산정한다.</p> <p>가맹본부는 당해분기에 지출한 광고비 중에서 각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을 다음 분기 첫달의 말일까지 명세서를 첨부하여 통지하고, 가맹점사업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한다.</p>	제19조
--	------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제22조 2항
○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제22조 2항
○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제22조 2항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계약 조항의 전부

<p>“갑”은 다음 각 호의 경우 1주일 전에 서면이나 e메일, 문자, SNS 등 기타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예고한 후 “을”에 대한 서비스 혹은 물품의 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제공급조건을 지체 없이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을”이 세금을 납부하지 못해 체납 처분을 당하거나, 주요 재산에 압류·경매 신청이 된 경우 2) “을”이 “갑”의 사전 동의 없이 “갑”의 영업표지가 인쇄된 소모품과 비품 등을 제작하거나 인쇄한 경우 3) “을”의 위법행위로 가맹점의 상표에 대한 신용에 손해를 끼친 경우 4) “갑”의 상호 또는 상표를 불법 부당하게 사용하는 경우 5) “을” 또는 “을”의 직원이 신규교육 또는 정기교육의 이수를 해태하거나 지체, 거부하는 경우 6)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라도 그 금액의 5% 이상이 연체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표사용료, 물품대금, 시스템사용료, 공사건설적금액, 기타 본 계약에 따라 “갑” 또는 “공급업체”에 지급해야 할 금액 7) “을”이 제8조 규정에 따라 시설의 유지보수를 게을리하여 브랜드 이미지를 훼손한 경우 8) “을”이 “갑”과 약정한 광고 및 판촉활동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9) “을” 또는 “을”의 직원이 제18조의 규정에 의해 “갑”이 지정한 복장을 착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10) “을”이 제2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갑”의 영업 비밀을 누설한 경우 11) “을”이 “갑”의 사전 동의 없이 점포의 권리이전, 명의변경을 하였을 경우 12) “을”이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동일한 불만사항을 접수 받고도 시정하지 아니하는 등 “갑”의 가맹점에 대한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행위가 지속되는 경우 13) “갑”의 서면동의 없이 가맹점운영권을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행사하게 하거나 위탁한 경우 14) 기타 본 계약에 정한 “을”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본 계약에 따른 “갑”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본 계약에 따른 합의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p>제13조 제2항</p>
--	-----------------

또는 일부를 변경할 수 있으며, 계약서의 기재된 것 이외의 필요한 사항 및 계약내용 변경사항은 귀하와 충분히 협의하여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조정 절차	동의 절차
계약 수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수정계약서(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수정 완료	수정 계약서(안)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를 있는 경우 수정계약서에 정한 날부터 효력 발생 동의를 얻지 못하는 경우 서면으로 재통지.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비고
1개월 전에 가맹본부에 대하여 서면으로 요청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문의: 영업팀  (비공개)

당사가 양도를 승인하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며 양수인은 교육비 및 계약이행 보증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원할 경우에는 당사는 양수인과 신규 가맹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규가맹계약일지라도 가맹점 모집비용, 개점행사비 등이 일반적인 신규가맹계약보다 적게 소요될 경우에는 비용 소요액에 상응하는 가맹금을 당사와 협의하여 지급하실 수 있습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행사하게 할 경우에는 당사에 사전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 영업을 상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구분	가능 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차	기타 의무사항
상속	상속인 사후통지시	모든 권리의무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상속사실 통지 → 상속 여부 확인(7일 소요) → 상속인과 계약체결(5일 소요)	교육수료 및 교육비 지급
대리행사	불가능			
업무위탁	본부 승인시 가능	모든 권리의무	업무위탁자 지정 후 3일 이내 사실 통지 → 신원 확인(7일 소요) → 위탁운영 승인(5일 소요)	교육수료 및 교육비 지급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당사는 계약기간 동안 귀하가 쉐스시과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그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비고
○ 계약기간중 일반인에게 초밥을 판매하는 업종 ○ 계약의 종료후 1년동안 일반인에게 초밥을 판매하는 업종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경업허가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시장조사 포함, 30일 가량 소요) → 허가 여부 통지 → 완료	문의: 영업팀  (비공개)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쉐스시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11:00 ~ 22:00 (11시간)	연중 무휴	문의: 영업팀  (비공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에 의거 오전 11시 부터 오후 10시까지의 매출이 영업을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저조하여 3개월간 영업손실이 발생하거나, 질병의 발생과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팀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제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권장 종업원수	직접 근무 여부	대체 가능 인력	비고
5명 이상	직접 근무	점주의 배우자, 직계가족	점주의 부재시 가맹본부에 사전 통보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를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감독 항목	감독 절차	빈도 및 시기	담당팀	비고
매장 청결(4항목)	담당자 매장 방문 → 청결도 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1회/3개월	영업지원팀	
친절도(5항목)	담당자 매장 암행방문 → 주문 → 친절도 확인 → 관리표 작성 → 완료	1회/3개월	영업지원팀	
품질 관리(7항목)	담당자 매장 방문 → 품질 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1회/3개월	영업지원팀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당사는 쉐스시 영업표지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의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 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광고 성격	부담비율		분담 절차	비고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광고 전체 행사	상품(또는 브랜드)광고	광고비의 50%	광고비의 50%	광고 계획 공고 → 가맹점 사업자 부담금 산정 → 부담금통지서 발송 → 수령후 7일 이내 지급	가맹점 사업자간 균등부담
	상품(또는 브랜드)광고+ 가맹점모집광고	광고비의 75%	광고비의 25%		
	가맹점모집광고	전액 부담	없음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개별 가맹점사업자가 스스로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함께 독자적으로 광고·판촉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특별하게 필요한 절차는 없습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 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가맹계약 위반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가맹계약 위반시 손해배상과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가 제공한 정보공개서, 계약서, 운영메뉴얼, 인테리어 감리, 교육, 경영지도 등에 가맹본부의 독자적인 노하우와 지적재산권이 포함되어 있는 바, 가맹점사업자가 이와 관련되어 지득한 사실을 가맹본부의 의사와

상관없이 타인에게 제공한 경우, 가맹본부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야기함을 인정하고, 그 손해 및 관련 분쟁에 소요된 제반 비용의 120%를 “갑”에게 배상한다.

- ②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제3조 제2항을 위반하는 경우 매 위반행위마다(연속적일 경우에는 매1일을 기준으로 한다) 금 일백만원을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에 대해 배상한다.
- ③ 가맹본부가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사업자가 동 위반행위 직전일부터 이전 1년간의 평균매출액에서 이후 3개월간의 평균매출액을 감한 비용의 5개월분을 손해배상으로 제공함으로써 동 위반과 관련된 손해배상을 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 단, 영업기간이 1년이 안 된 경우에는, 영업기간 중의 평균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
- ④ 기타의 손해배상에 관해서는 당사자의 협의, 조정, 중재, 판결 등에 의한다.
- ⑤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과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내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합계		47일 내외	15p~16p 참조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접수 -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D-47	
사업 설명·상담	- 정보공개서 제공 -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 가맹희망자 상담 - 계약서 제공	D-46 ~ 45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입지선정 -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필요시 실시	
최종 협의	- 개설 승인	D-34 ~ 31	
가맹계약 체결	- 계약 체결	D-30	
가맹금 예치	- 기업은행에 가맹금 예치	D-29(1일)	
점포실측/설계	- 투자비 산출	D-27 ~ 25(3일)	
실내외 공사착수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D-24(1일)	
인테리어 공사	- 공사 실시	D-24 ~ 5(20일)	
교육 실시	- 점포운영교육 실시	D-7 ~ 4(3일)	
점포 개설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D-day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 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점포환경개선 사유	가맹본부 부담 비용항목	가맹본부 부담 비용비율	지급절차	비용부담 제외 사유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판교체 비용 ○ 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 (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분할지급 시 절차> ○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 (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포환경개선 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걸쳐가맹본부 부담액을 분 할 지급 (1차 : 청구일 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 부터 60일 이 내, 총 부담 액의 30%, 3 차 : 2차 지 급 일 로 부 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	--	--	---	--	--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당사는 가맹점을 개설 또는 운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지원제도는 가맹본부의 경영사정 등에 의하여 가맹계약 기간 중이라도 지원여부 및 그 범위가 변경 또는 추가될 수 있습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별도)

지원정책	주요 내용	지원조건	지원기간	지원금액	비고
개점행사비	해당없음				
판촉장려금	해당없음				
판촉지원	해당없음				
판매용 집기 무상대여	해당없음				
반품지원	해당없음				
마일리지	해당없음				
CRM	해당없음				
테스터	해당없음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 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부담	비 고
분기별 1회 이상 주기적인 방문	상품,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분기별 1회 이상 주기적으로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에 직접 방문하여 매장상태 점검 및 경영지도를 진행	가맹본부 부담	문의: 경영지원팀

4. 신용 제공 등 내역

당사는 쉐스시 가맹점사업자를 위하여 신용 제공 또는 알선을 하지 않습니다.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돕기 위해 경영상 지원활동을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아래 지원내용 이외에도 가맹점사업자의 경영사정 등을 감안하여 추가 지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원정책 ^①	주요 내용 ^②	지원조건 ^③	지원기간	지원내용 ^④	비고 ^⑤
매출부진 경영지원	매출부진 가맹점 판매촉진을 위한 경영지원	직전 3개월간 매출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가맹계약기간	경영컨설팅 제공	

Ⅷ.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당사는 쉐스시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기한	비고
신규 교육	회사 소개 음식 가공 POS 사용, 입금 방법 등	실습교육 집단 강의	가맹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	필수 교육
보수 교육	신메뉴 가공 종업원 관리 실무 등	실습교육	매년 가맹계약 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	매년 필수적으로 이수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쉐스시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최소시간	비용(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비고
신규 교육	14일	5,500	최초 계약시 이수
보수 교육	3일	협의	

3. 교육·훈련의 주체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계약 당사자가 원하여 당사자 외 직원도 같이 교육을 받게 되면 인원 추가에 따라 비용도 추가됩니다.

4. 교육·훈련 불참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당사의 교육·훈련 불참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과 관련된 사항은 없습니다.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연번	지역	명칭	소재지

* 직영점은 없습니다.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②

(단위 : 년, 개월)

2024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없습니다.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산정기준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4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③
없습니다.	

별첨 1. 가맹본부의 2022~24년도말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 (1) 재무상태표
- (2) 손익계산서

별첨 1.

(1) 재무상태표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2) 손익계산서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